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02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김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택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727,2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4가소33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8. 'C은 원고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

(1)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3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2016. 11. 29. 사망)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1965. 1. 28.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50년동안 부부공동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로 약 25년 동안 함께 거주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이후 고령의 피고가 계속 살아갈 유일한 주거에 해당하는 점, C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피고는 C의 재산상태를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① C은 2004. 6. 14.부터 2007. 5. 14.까지 및 2008. 4. 14.부터 사망일인 2016.11. 29.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4가소338호 사건의 소장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령한 점(갑 2호증, 을 2,8호증),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유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망인과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같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6. 15. 채권최고액 55,900,000원인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6. 4.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46,000,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10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그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10,727,272\text{원} = (105,000,000\text{원} - 46,000,000\text{원}) \times 2/11 \text{ 지분}$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금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0,727,27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곽형섭

별지

부동산의 표시

영주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 제2층 L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영주시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영주시 M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12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N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84.6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영주시 I 대 16,409.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6,409.4분의 44.759. 끝.

